

—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—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선산보건소 보건진료원의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 증원
- '04. 6.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의 한시 기한을 “여유기구제” 운영시까지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400 ⇒ 1,402명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375 → 1,377명(2명 증원 - 별정7급상당)
 - 조정내역 : 선산보건소 → 2명 증원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별정직		기능직	
		5급	6급	7급	8급	9급	6급상당	7급상당	9급	10급
정 원	53	1	3	11	17	7	10		2	2
금 회	2							2		
조 정	55	1	3	11	17	7	10	2	2	2

-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 한시기한 연장 → “여유기구” 설치시까지
 - 존속기한 : 2004. 6. 30 → 2005. 6. 30(1년간)

4. 참고사항

- 경북도 자치행정과-5357('04. 7. 2)호의 구미시 보건진료원 정원 승인
- 경북도 자치행정과-5358('04. 7. 2)호의 읍면동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

5. 검토의견

- 경상북도의 구미시 보건진료원 정원 승인 및 읍면동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한시기구 기한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임.
-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의 한시기한을 여유기구 설치시 까지 1년간 연장하고, 선산보건소 보건진료원 별정7급 2명을 증원 함으로써 총 정원을 1,400명에서 1,402명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